

2007年 2月
碩士學位論文

産業被害救済에 관한 國際規範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李 敦 國

産業被害救済에 관한 國際規範 研究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Norms on Industrial
Injury Remedy*

2007 年 2 月 25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李 敦 國

産業被害救濟에 관한 國際規範 研究

指導教授 朴 瑢 炫

이 論文을 法學碩士 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 年 10 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李 敦 國

李敦國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인

2006 年 11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i>ABSTRACT</i>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4
제1절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4
제2절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국제규범체계	5
1. 반덤핑 규제 규범	5
2. 보조금 지급 규제 규범	7
3. 긴급수입제한조치 규범	7
제3장 반덤핑관세제도	10
제1절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10
제2절 반덤핑관세조치의 발동요건	13
1. 덤핑수입	13
가. 덤핑의 존재	13
나. 덤핑차액	14

(1) 정상가격의 결정	
(2) 수출가격의 결정	
(3)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2.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16
가. 국내산업의 의미	17
나. 실질적 피해	17
다. 실질적 피해의 우려	19
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20
3. 인과관계의 존재	20
제3절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21
1. 조사의 개시	21
2. 조사의 진행	21
3.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	22
4. 증거	23
제4절 반덤핑관세의 부과	24
1. 잠정조치	24
2. 가격인상 약속	25
3.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	27
제5절 반덤핑관세 부과의 소급적용과 일몰조항	28
1. 소급적용	28
2. 일몰조항	28
제6절 분쟁의 해결	29

제4장 상계관세제도 30

제1절 상계관세제도의 개념 30

1. 상계관세제도의 의의 30

2. 상계관세제도의 정립 30

3. 상계관세부과의 요건 31

가. 보조금의 의의 32

나. 보조금의 특정성 32

다. 보조금의 종류 33

(1) 금지보조금

(2) 상계가능보조금

(3) 허용보조금

제2절 금지보조금 34

1. 금지보조금의 정의 34

2. 금지보조금의 종류 35

가. 수출보조금 35

나. 수입대체보조금 35

3. 구제절차 36

가. 협의 및 대응조치 36

나. 상계조치 37

제3절 상계가능보조금 37

1. 상계가능보조금의 정의 38

2. 상계가능보조금의 요건 38

가. 부정적 교역 효과	38
나. 심각한 손상	38
3. 구제절차	39
가. 협의 및 대응조치	39
나. 상계조치	41
제4절 허용보조금	41
1. 허용보조금의 정의	41
2. 허용보조금의 유형	42
가. 연구개발보조금	43
나. 지역개발보조금	43
다. 환경보조금	44
3. 구제절차	45
가. 협의 및 대응조치	45
나. 상계조치	45
제5절 상계조치의 발동절차	46
1. 조사의 개시	46
2. 조사의 진행	46
3. 피해의 판정	48
4. 잠정조치의 약속	49
가. 잠정조치	49
나. 약속	49
5. 상계관세의 부과	49

제5장	세이프가드제도	51
제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정립과정	51
1.	세이프가드제도의 의의	51
2.	GATT 제19조	52
3.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배경	53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요건	55
1.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55
2.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58
가.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58
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59
3.	인과관계의 존재	59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60
1.	조사의 개시	60
2.	잠정조치	61
3.	구제조치	61
가.	수입제한조치	61
	(1) 관세인상	
	(2) 수입수량제한	
나.	구조조정 지원 조치	62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63
1.	적용대상의 통제	63
2.	내용상의 통제	64

3. 적용기간의 통제	64
4. 기타의 의무에 의한 통제	65
가. WTO에의 통보 및 협의 의무	65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적용	65
제5절 보상 및 보복조치	65
1. 보상	65
2. 보복조치	65
제6장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 ·	67
제1절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67
1. 반덤핑관세제도	67
2. 상계관세제도	69
3. 세이프가드제도	70
제2절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2
1. 발동요건상의 명료성 부재	72
2.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에서의 분산 운용	73
3.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용기관의 비독립성	73
제7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

*A Study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Remedy of Industrial Injury*

Lee Don-Guk

Advisor : prof. Park Yong-Hyu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ainly aims at establishing free and fair trade order among member countries. Fair trade principles are meant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based on free market competition by correcting trade distortion caused by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dumping and export subsidies as well as removing all obstacles to impartial competition. Without securing fair trade order, nations around the world can either hardly expect economic growth nor an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ccompanied by the expansion of free trade.

Therefore, the WTO system, there are some norms to restrict unfair trade practices. They cover article 6 of the GATT 1994 and WTO Anti-Dumping Agreement on Tariffs(Anti-Dumping Tariff System), article 16 of the GATT 1994 and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untervailing Tariff System), and article 19 of the GATT 1994 and Negotiations on the Agreement on Safeguards of the WTO (Safeguards System). These international norms grant the trading countries rights to save local business victims from market openness as well as free competition encouraged by the WTO system. In other words, they come into play to serve

the legal remedy on industrial injury.

In the meantime,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domestic legal systems Which concern industrial injury remedy that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norms. Especially Korea, which has grown as one of the world's 10 largest economic powers, needs marshal a range of laws more than anything else to remedy industrial injuries caused by import.

This study aims at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To this end, it deals with a material and relevant discussion for the the law reform Korea's sophisticated legal systems to remedy industrial injuries caused by import by systematically arranging international norms on which Korea's industrial injury remedy law is based. These study can also enable the companies to overview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s thus far, relating to their business practice.

In order to accomplish its goal, thu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industrial injury remedy system in chapter 2, and anti-dumping tariff system, countervailing tariff system, safeguards system in chapter 3, 4, and 5 respectively. In chapter 6, it reviews how Korea has enforced International norms on industrial injury remedy and finally, in chapter 7 it comes up with necessary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those international norms industrial injury remedy system.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WTO체제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가 관세와 수량제한 및 각종 기술장벽 등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공정무역주의는 덤핑행위나 수출보조금의 지급등과 같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여 무역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공정무역의 질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무역질서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¹⁾

그렇다면 WTO체제하에서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 규범은 크게 ‘형식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과 ‘실질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前者에 해당하는 규범으로는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차별적 무역규제(GATT 제1조, 제3조), GATT1994 제6조(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및 WTO 반덤핑관세협정, GATT 1994 제16조(보조금)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이 있다. 반면에 後者에 해당하는 규범으로는 GATT1994 제19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GATT 제12조, 제18조 등) 등이 있다.²⁾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들 중 GATT 1994 제6조 및 WTO 반덤핑관세협정(반덤핑관세제도), GATT1994 제16조 및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계관세제도), GATT1994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긴급수

1)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 : 법영사, 1998), p. 241.

2) 상계서, p. 247.

입제한조치제도, 세이프가드제도)은 WTO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교역국에게 관련 조치권을 부과하는 국제규범이다. 한 마디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인 것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이들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국내법체계를 정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 10위권대의 무역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교한 법제의 완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처한 국내외 무역환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수량제한 등 각종 산업보호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88년 IMF 8조국³⁾ 가입과 1990년의 GATT 11조국⁴⁾으로의 이행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수입규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UR협상타결과 WTO체제 출범은 이제 어느 나라도 국제경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시대는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⁵⁾ 이에 우리나라는 '87년부터 무역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시장의 완전개방과 함께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사태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 200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비로소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법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3) IMF협정 8조에 규정한 의무규정의 준수를 수락한 나라. 즉 경상거래의 결제에 관한 외환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 때문에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의무를 진 국가. 이러한 국가가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생산과 판매수량의 제한과 과잉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제한, ② 국방·위생·풍속 등 경제 외적 목적을 위한 제한, ③ 웨이버(waiver:자유화 의무의 면제)를 취득한 경우의 제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5) 노승혁,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에 관한 고찰” 「무역구제」, 2006년 봄호/제22호(무역위원회, 2006. 4), p. 24.

6) 상계논문, p. 24.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우리의 정교한 법제의 완비에 자료로서 기능하고, 관련 기업에게는 국제적 규범체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익의 도모와 국제통상법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고찰로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체계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 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분석·고찰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고찰로서 상계관세제도의 개념, 보조금의 종류로서 금지보조금·상계가능보조금·허용보조금에 대하여 논술한다. 제5장에서는 세이프가드제도의 정립과정과 세이프가드조치의 요건, 그리고 그 내용, 세이프가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 보상과 보복조치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6장에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제7장에서 결론으로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외의 참고문헌과 자료, 관련 판례를 분석·검토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장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제1절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국가의 무역환경이나 산업정책 또는 정부의 산업관리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으므로 一義的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미를 狹義와 廣義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狹義의 산업피해구제제도란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등 GATT 및 WTO 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미국 통상법 제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산업피해구제제도란 물품의 수입 또는 각종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특정 외국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제도이다.⁷⁾

廣義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추가한 개념이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WTO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국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즉, 廣義의 산업피해구제제도란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취하는 모든 조치에 관련된 제도와 법적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반덤핑관세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조치, 각종 보복조치, 기타의 피해구제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⁸⁾

한편, WTO의 반덤핑관세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등에 나타난 산업피해구제의 의미는 주로 산업피해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 이 원인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덤핑이나 보조금의 영향이 자국의 확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반덤

7) 김영근, 황상규, “WTO체제하의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도에 관한 연구” 「동립경영연구」, 제6집, (한국동립경영학회, 1997), P. 231.

8)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서울 : 박영사, 1998), p. 196.

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WTO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국 영역 내에서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과 조건으로 상품이 자국의 영역 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⁹⁾

결론적으로 산업피해구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WTO의 산업피해구제제도로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등이 있다.

제2절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체계

1. 반덤핑 규제 규범

덤핑은 생산비 이하의 수출을 감행함으로써 수입국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덤핑규제의 근거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내재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또 시장경제원리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간에도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덤핑규제의 기준이 되는 공정성을 어떻게 조화있게 정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이래 이와 같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체계가 다음과 같이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다.¹⁰⁾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규정은 GATT 1994 제6조이다. 이 규정은 덤핑으로 말미암아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덤핑마진을 상쇄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9) 김영근, 황상규, 전개논문, PP. 230 - 231.

10) 서헌제, 「국제경제법」(서울 : 율곡출판사, 1996), pp. 317- 319. 참조.

GATT 1947 출범 당시에는 덤핑관련 규정은 이러한 간단한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국들이 자국 반덤핑법을 무역규제의 새로운 방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7반덤핑협정’이 체결되었고, 동경라운드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1979년반덤핑협정’이 체결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반덤핑관세부과가 활발해 지면서 1979년의 반덤핑관세협정을 중심으로 한 GATT의 반덤핑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국제규범체계면에서 볼 때 1979년 협정은 GATT와는 독립된 부수협정이기 때문에 GATT 회원국 중 일부만 가입함으로써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에 무차별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선진국의 빈번한 규제대상이 되어 온 수출지향적인 개도국들은 1979년 협정이 제시하는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조치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좀더 명확히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들은 기업활동의 구체화에 따라 기존의 규범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덤핑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반덤핑규범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우회덤핑, 반복·상습덤핑, 이진가격 조작을 통한 위장덤핑, 제3국 덤핑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시된 UR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은 대립되었지만 대체로 양자의 견해를 절충하는 선에서 최종합의를 보았다. 즉, 덤핑마진 및 피해판정기준이 명료화·강화되었고, 반덤핑관세의 부과기준도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덤핑규제조치의 남용가능성을 감소시킨 반면 소멸시효에 대한 예외 허용이라든지 인과관계의 왜곡가능성 등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우회덤핑방지 규정은 최종단계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UR협상의 결과 타결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소위 WTO반덤핑관세협정’은 3부 18개 조항으로 된 본문과 ‘현장조사’와 ‘입수가능정보’에 관한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2. 보조금 지급 규제 규범

각국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구조조정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국산업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지원은 각국 정부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덤핑의 경우보다도 각국의 경제정책·산업정책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선진국은 농업이나 특수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은 대신에 보조금 지원도 적은 반면,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한 급속한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많은 산업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국제적 규범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규정은 GATT 제16조로서 수출보조금을 1차 상품과 그 이외의 상품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누어, 前者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지급만을 금지하고, 後者는 일반적으로 지급을 금지하였다. 이로써 기존 GATT체계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묵인되게 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79년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지급감축에 실패함에 따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UR 협상의 타결결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는바, 동 협정은 11부 32개 조항으로 된 본문과 수출보조금예시목록, 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수출보조금으로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 종가기준 총보조금지급의 계산, 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개발절차, 현장조사절차, 개발도상회원국 등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¹¹⁾

3. 긴급수입제한조치 규범

11) 서헌재, 상계서, pp. 317 - 319.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치라 함은 일정수량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수입제한조치는 GATT의 자유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GATT제19조는 수입품으로 인해 자국산업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GATT상의 의무로부터 도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GATT 제19조를 ‘도피조항 (escape clause)’라고도 한다.¹²⁾

GATT 제19조는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구제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다른 조치들을 원용함으로써 이 조항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GATT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첫째, 심각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둘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각국의 국내절차의 명료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셋째, 각국의 GATT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통보 및 합의가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단기의 조치기간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다섯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유사한 다른 조치들을 특정 대상국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타결되었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분야에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합의에 실패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쟁점 분야로는 조치의 선별 적용 적용여부, 보상과 대응조치, 구조조정, 개도국 특혜규정, 피해기준, 통보와 협의요건, 감시제도의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 1982년 GATT 각료회의에서는 재협상을 선언하고 협상의 원칙으로 투명성, 적용범위, 발동기준, 산업조정과의 관계, 보상과 이행, 그리고 분쟁해결

12) 상계서, p. 389.

13) 상계서, pp. 390 - 391.

기능 강화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1986년 UR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에도 그대로 수용되었고, 결국 UR에서는 ‘세이프가드협정’ 채택이라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전문과 14개조의 본문 및 11조 2항의 예외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¹⁴⁾

14) 상계서, pp. 394 - 395.

제3장 반덤핑관세제도

제1절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¹⁵⁾

이 제도의 본래적 목적은 불공정무역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지만, 각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무역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은 그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기타 신흥공업국에 대한 상계관세규제를 남용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에 관한 GATT/WTO규범은, 규제의 대상이 될 덤핑·보조금 개념을 명확히 하여 회원국들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규제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규제자체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증가하는 덤핑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⁶⁾

즉, GATT는 “일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덤핑이 회원국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원국은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이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반

15)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제도 개관」(2001. 12), p. 4.

16) 서헌재, 전제서, p. 310.

17) GATT 제6조 제1항, 제2항.

덤핑협정을 1967년 케네디라운드에서 제정하고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개정하여 운영한 바 있다.¹⁸⁾

1979년의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수입에 대한 정의를 “한 나라의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업권내에 도입된 경우”로 규정하고, 정상가격은 “수출국시장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는 가격,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합리적 이윤이 포함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규정하였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industry)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는 검토요소로서 생산, 판매, 재고, 이윤, 시장점유율, 고용, 임금, 자금조달, 투자,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 투자회수율, 설비가동률, 생산성 등 14개 지표를 분석하도록 규정한 것이다.¹⁹⁾

또한 1979년의 반덤핑협정은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덤핑수입에 의한 것으로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검토에서 덤핑수입과 덤핑수입의 요인들을 검토하도록 함과 아울러 덤핑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가 실질적인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덤핑수입 이외의 검토요인들로서 덤핑수입이 아닌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양태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예시하였다.²⁰⁾

그리고 1979년의 반덤핑협정은 덤핑조사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의 서면신청 또는 회원국 정부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절

18) 1979년의 반덤핑협정은 제1장 반덤핑코드(Anti-dumping Code)에서 일반원칙, 덤핑의 결정, 피해판정, 국내산업의 정의, 조사개시, 증거자료, 조사절차, 약속, 재심,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을, 제2장에서는 반덤핑위원회 및 분쟁해결절차를, 그리고 제3장은 최종규정으로 회원국의 입법조치, 효력발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덤핑수입사실이 있어야 하고,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노승혁, 전제 논문, pp. 30 - 31.)

19) 상계논문, p. 31.

20) 상계논문, p. 31.

차에서 영업상 비밀이 아닌 자료의 공개와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 중의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비판정 이후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잠정조치는 가능한 한 보증금 형태로 부과하도록 하였다.²¹⁾

한편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정상가격과 덤핑수입가격과의 차액, 즉 덤핑마진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lesser duty rules)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덤핑수입물품의 수출자가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약속(undertaking)을 제의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약속 규정을 두었다.²²⁾

그 뿐만이 아니라 반덤핑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이해당사국들의 협의를 위한 반덤핑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를 설치하고, 회원국이 조사를 개시하거나 잠정조치 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반덤핑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피조치국은 덤핑조사 개시이후 덤핑조사 절차에서 언제든지 조치국가와 협의(consultation)를 제의할 수 있으며, 당사국 간 협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덤핑위원회에 조정(conciliation)을 제의할 수 있고, 반덤핑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²³⁾

이와 같이 1979년 반덤핑협정은 1967년 반덤핑협정보다는 그 내용과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지만 조사개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 조사절차 등에서 용어의 모호성과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각국의 반덤핑법의 관행 및 절차가 제각각이었고, 오직 제도가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만 운영됨에

21) 상계논문, pp. 31 - 32.

22) 상계논문, p. 32.

23) 상계논문, p. 32.

따라 UR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가 주된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²⁴⁾

UR 반덤핑관세협상의 기본목표는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을 개선하고 명료화, 확대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개선’이란 협정규정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고, ‘명료화’란 조약의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확대’란 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⁵⁾

UR 반덤핑관세협상에서의 쟁점은 협정규정의 개선, 명료화 및 기준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덤핑방법의 결정, 동조제품의 범위, 국내산업피해의 기준과 결정, 조사절차의 강화, 반덤핑관세의 소멸시효의 인정 및 기간, 우회덤핑 등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인데, 이중 우회덤핑 규제조항의 신설문제는 미국과 수출개도국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반덤핑관세의 주요대상국들의 최대관심사의 하나인 반덤핑관세부과의 남용문제가 취급된 UR반덤핑관세협상은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여 본문 제3부 18개 조문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WTO)반덤핑관세협정을 이끌어 내었다.²⁶⁾

제2절 반덤핑관세조치의 발동요건

1. 덤핑수입(*dumped imports*)

가. 덤핑의 존재

‘덤핑(dumping)’이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24) 상계논문, p. 32.

25) 최승환, 전계서, p. 250.

26) 상계서, p. 250.

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영역에 도입된 경우 덤핑이 존재한다.²⁷⁾ 여기서 ‘동종제품’이란 동일한 물품 즉, 모든 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물품과 같은 물품을 의미하며, 만약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나 조사대상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여타 물품을 의미한다.²⁸⁾

나. 덤핑차액

(1) 정상가격의 결정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제품에 대한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비교가능한 가격을 말하는 정상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가격 또는 국내판매가격을 의미한다. ‘반덤핑관세협정’은 덤핑판정시 수출가격과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가격의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²⁹⁾

첫째, 수출국내 동종제품의 판매가 없거나 특별한 시장여건이나 소량판매로 인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안 될 경우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을 대표적인 제3국 수출가격이나 또는 구성가격³⁰⁾과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수출국내 동종제품의 판매가 고려대상물품의 수입국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되고 동 비율 이하의 경우에도 증거가 제시된다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국내 국내판매가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수입국에 의한 자의적인 구성가격의 적용을 제한하였다.³¹⁾

2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1항.

28)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6항.

29) 최승환, 전제서, pp. 251 - 252.

30) 수출국내의 제품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와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가격.

3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

둘째, ‘통상적인 상거래’란 보통의 조건 또는 관행에 따른 제품의 판매를 말하는 데, 원가이하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가이하의 판매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가이하 판매의 정상가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원가이하의 판매가격이 조사기간 동안의 가중평균비용 보다 높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총비용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며, 원가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³²⁾ 이내에 상당량³³⁾ 지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³⁴⁾

셋째, 판매관리비와 기타비용 및 이윤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생산·판매한 실제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게 함으로써 구성가격의 산정기준을 명료히 하였다.³⁵⁾ 동 자료에 입각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①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내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게 된 실제이윤, ② 기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내 국내시장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게 된 가정평균이윤, ③ 기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내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게 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 등에 입각하여 구성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³⁶⁾

(2) 수출가격의 결정

32) 상당가격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의 주석4.)

33)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개별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 이하이거나 단위비용 이하의 판매규모가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적어도 20%이상인 된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가 상당량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의 주석5.)

3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 1.

35) 미국의 경우 실제 판매관리비나 이윤에 관계없이 판매관리비는 원가의 10%, 이윤은 원가에 판매관리비를 합산한 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다.(최승환, 전거서, fn. 13.)

36)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 2.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제휴나 보상협정 등을 믿을 수 없다고 관계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이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하고,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국이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수출가격을 구성할 수 있다.³⁷⁾ 구성수출가격은 구매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운송비 등의 직접판매비, 관세 등의 세금, 이윤,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³⁸⁾

(3)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는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제반 판매 조건, 과세, 거래단계, 양적·물리적 특징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타 차이점들에 대해서 매건마다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³⁹⁾ 2조 3항의 경우,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과세를 포함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윤의 공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았다면 당국은 구성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당국은 공정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동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⁴⁰⁾

2.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3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3항.

38) 최승환, 전게서, p. 252.

39) 상기 요소들 중 몇몇은 중복가능하며, 당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규정하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4항 주석7.)

40)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4항.

가. 국내산업의 의미

피해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이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나, 생산자가 덤핑제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나 또는 생산자 자신이 덤핑제품의 수입자인 경우는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분리된 시장내의 생산자가 관련제품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해당시장내에서 판매하고, 분리된 시장내의 수요의 현저한 부분이 당해국 내의 여타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개 수입회원국 내에 2개 이상의 분리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 시장의 국내생산자는 반덤핑절차의 목적상 별개의 분리된 국내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리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국내시장의 상당 부분에 피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리된 시장에 덤핑수입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해당시장내의 관공현생산자 전체 또는 대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⁴¹⁾ 2개국 이상의 국가가 GATT 1994 제24조 상의 관세동맹을 구성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전체통합지역내의 산업을 국내산업으로 간주한다.⁴²⁾

나. 실질적 피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함께 덤핑수입이 동종제품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거나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해야 한다. ‘중대한’ 피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반덤핑관세제도가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관행을 대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무역관행에 대해 발동되는 세이프가협정상 리 ‘심각한’ 피해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로 해석된다.⁴³⁾

4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4조 1항

42)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4조 3항. ; 최승환, 전게서, pp. 254 - 255.

먼저 GATT 1994 제6조의 목적상, 덤핑피해의 결정은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① 덤핑수입의 물량과 덤핑수입이 국내시장에서 동종제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②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⁴⁴⁾

덤핑수입물량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상당국은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나 수입국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한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 덤핑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덤핑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상당국은 수입국의 동종제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의 여량이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는지, 덤핑수입이 없었으면 일어났을 가격상승을 상당히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중 1개 또는 수개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⁴⁵⁾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의 검토는 판매액,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회수율,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규모 ;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영향 등 산업의 상황과 관련한 제반 경제적 요소 및 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 열거된 요소들은 예시적일 뿐이며, 이들 요소 중 1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⁴⁶⁾

2개국이상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덤핑방지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① 각구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덤핑마진이 제5조 8항에서 명시된 최소의 양보다 많으며, 각구으로부터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② 수입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입물품간의 경제조건 및 수입된 물품과 국내동종물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할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그러한 수입에 따른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⁷⁾ 수입영향의

43) 최승환, 상계서, P. 253.

4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1항.

45)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2항.

46)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4항.

누적평가는 사실상 선진국들이 관행적으로 행해 왔음을 감안해 볼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적평가를 인정한 것은 경미한 덤핑마진이나 소량수출을 행한 국가가 누적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⁴⁸⁾

그리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수입이 이 협정에서 의미하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관계입증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동시에 당국은 산업의 피해를 가져다 주는 덤핑수입 이외의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에 돌려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수입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양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수출이행력이 포함된다.⁴⁹⁾

다. 실질적 피해의 우려

실질적 피해위험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덤핑이 피해를 야기할 사태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⁵⁰⁾ 실질적 피해위험의 존재와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① 실제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② 추가적인 수출을 수용할 수 있는 여타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국으로 덤핑수출을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

4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3항.

48) 최승환, 전게서, p. 253.

49)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5항

50) 유일한 예외는 아니나, 한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으로 실질적인 물품의 수입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수급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7항 주석10.)

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압박한 수출자 생산능력의 실제적인 증가, ③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 수출증대 가능성 여부, ④ 수입국내 조사대상 물품의 재고현황 등의 요소들 중 하나 또는 몇 가지만으로 반드시 결정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으나, 고려되고 있는 요소들 전체는 향후의 덤핑 수출이 압박하고 또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되어야 한다.⁵¹⁾

라.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유무는 국내산업의 투자, 가동률, 손익, 시장점유율 등에서의 정상 기대치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된다.⁵²⁾

3. 인과관계의 존재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과관계는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조사당국은 ① 덤핑 가격으로 팔리지 아니한 수입상품의 물량 및 가격, ② 국내의 수요감소나 소비행태의 변화, ③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④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들 요소를 덤핑수입의 원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⁵³⁾

5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7항.

52)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계서, pp. 13 - 14.

53) 상계서, p. 14.

제3절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1. 조사의 개시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는 정해진 국내산업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대신한 자의 서면신청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청은 ① 덤핑, ② 이 협정에서 해석되고 있는 바와 같은 GATT 199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 ③ 덤핑수입과 추정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⁵⁴⁾ 덤핑조사는 조사당국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시된⁵⁵⁾ 신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수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동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한 자에 의해서⁵⁶⁾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 동 신청은 동 신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의 부분으로서 생산된 동종물품의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가 찬성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의 총생산액의 25% 보다 작은 경우 조사가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⁵⁷⁾

2. 조사의 진행

5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1항, 2항.

55)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산업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지지 또는 반대의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4항. 주석13).

56)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역내에서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의 근로자나 그러한 근로자의 대표가 제5조 1항에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4항. 주석14).

5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4항. ; 예컨대, 1993년 한국의 반도체 3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건의 경우 제소자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미국내 생산점유율은 2.1%에 불과하므로 '반덤핑관세협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동 미국회사는 제소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최승환, 전게서, p. 255. fn. 17).

해당 국내산업이 덤핑피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기관은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여부를 결정한다.⁵⁸⁾ 만일 특별한 상황에서 조사기관이 국내산업 또는 이를 대신 한 자의 서면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키 위해서는 덤핑, 피해 및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⁵⁹⁾

덤핑조사신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은 기각되고 동시에 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⁶⁰⁾ 특히 덤핑마진이 매우 작거나 또는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정상가격 대비 퍼센티지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 동 덤핑마진은 매우 작은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물품 수입량의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개별적으로 수입국내 동종물품 수입의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의 수입국내에서 동종물품의 수입의 합계가 7%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덤핑수입은 통상적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⁶¹⁾

그리고 덤핑조사가 개시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후 1년 내에 덤핑조사가 종결되어야 하며, 덤핑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⁶²⁾

3.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가 가능하다.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의 신청은 조치를 요청하는 제3국의 당국에 의해서 행해진다.⁶³⁾ 이와 같은 조치의 신청은 수

58)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3항.

59)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6항.

60)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8항 전단.

6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8항.

62)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10항.

입상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격정보 및 혐의가 있는 덤핑행위의 제3국의 관련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상세한 정보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입국 당국이 추가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제3국에 요청하는 경우 제3국은 추가획득과 관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⁶⁴⁾

한편 수입국의 당국은 이와 같은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기된 덤핑이 제3국의 관련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당해산업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는 당해산업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근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⁶⁵⁾ 그리고 사안의 검토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입국에 달려 있다. 만일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한다면,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상품교역이사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동이사회와의 접촉개시는 수입국이 행한다.⁶⁶⁾

4. 증거

반덤핑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는⁶⁷⁾ 이해 당사자는 조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 받는다.⁶⁸⁾

반덤핑 조사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는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⁶⁹⁾ 동 기한의 연장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한 적

63)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1항.

6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2항.

65)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3항.

66)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4항.

67) 여기에서 이해당사자란 ①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외국의 생산자나 수입자, 또는 동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협회 또는 사업협회, ② 수출국 정부, ③ 수입국 내 동종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국내에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협회 또는 사업회.

68)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항.

69)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일반적으로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질의서가 수출

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요청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⁷⁰⁾ 또한 조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물품과 관련된 개개의 알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각각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수 또는 관련물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사기관은 대상자 선정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물품의 수를 제한하여 검사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⁷¹⁾ 성격상 비밀인 정보⁷²⁾, 또는 반덤핑 조사시 당사자가 비밀로 제공하는 정보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시하는 측의 특별한 허가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⁷³⁾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당국은 획득가능한 사실들을 근거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예비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⁷⁴⁾

제4절 반덤핑관세 부과

1. 잠정조치

국내 당사자 또는 수출국 대표로부터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분리된 관세영역의 경우 수출영역의 공식적인 대표부로 발송된 일자로부터 1주일 후에는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항의 1. 주석15).

70)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항의 1.

7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0항.

72) 예컨대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경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되며 정보공급자 및 정보의 원공급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73)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5항. ; 특히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제한적으로 발한 보호명령에 의한 공개는 요청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5항, 주석17)

7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8항.

반덤핑관세협정은 잠정조치의 발동요건과 기간을 강화하였다.⁷⁵⁾ 즉, ①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공표되고, 이해당사자가 정보의 제공 및 의견개진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경우, ② 덤핑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 시켰다는 예비적인 긍정판정이 있고, ③ 조사기관이 조사기간 중 야기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⁷⁶⁾ 또한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방지관세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정관세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보증금(현금 예치 혹은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정상적인 관세와 덤핑방지관세 추정액이 표시되고, 평가의 유보가 여타의 잠정조치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평가유보는 적절한 잠정조치의 하나로 인정된다.⁷⁷⁾

그리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할 수 없고⁷⁸⁾,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기관이 결정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급적 단기간에 한정된다. 조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로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동 기간은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⁷⁹⁾

2. 가격인상 약속

가격인상약속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인상조정하여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절차가 정지되거나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⁸⁰⁾ 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75) 최승환, 전제서, p. 257.

76)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1항.

77)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2항.

78)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3항.

79)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4항.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격인상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라면 인상폭은 덤핑마진보다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⁸¹⁾

가격에 관한 약속은 수입국 당국이 덤핑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리지 않는 한, 수출자에게 제시되거나 수락되어서는 안 된다.⁸²⁾ 수입국 당국이 가격에 관한 약속수락이 예를 들어 실제적,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이유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제시된 가격에 관한 약속은 수락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다면 당국은 수출자에게 동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는 사실도 출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⁸³⁾

만일 가격약속이 수락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수출자가 원하고 당국이 결정한다면 이에 관계없이 덤핑과 피해의 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덤핑과 피해에 대한 부정적 판정이 내려졌다면, 동 결정이 가격에 관한 약속에 크게 기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관한 약속은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이 경우에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인상 약속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덤핑과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가격인상 약속은 본 협정의 제반조건과 규정에 일치하는 수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⁸⁴⁾

수입국 정부는 가격에 관한 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어떠한 수출자도 동 가격에 관한 약속을 강요받아서서는 안 된다. 수출자가 이러한 가격에 관한 약속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건

80) 최승환, 전게서, p. 258.

81)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1항.

82)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2항.

83)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3항.

84)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4항.

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국은 덤핑 수입이 계속되는 경우에 피해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정할 수 있다.⁸⁵⁾

수입국 당국은 약속을 수락한 모든 수출자들에게 동 약속의 이행과 관련한 주기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련정보에 대한 검증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국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확정관세는 잠정조치 적용전 90일 내에 소비용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급평가는 가격인상 약속 위반전에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⁸⁶⁾

3.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

반덤핑관세는 가격인상약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덤핑을 초래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물품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을 ‘비차별적으로’ 징수한다.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관세부과여부와 세액의 범위는 수입국 당국이 결정한다. 다만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⁷⁾

반덤핑관세가 미국에서와 같이 ‘소급적 기초’에 입각하여 산정된 경우 관세지불에 대한 최종판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종산정요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관세가 EU등에서와 같이 ‘장래적 기초’에 입각하여 산정된 경우,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분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조사대상물품 수입자가 환급을 요구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되,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관세의 환급은 가능한 한 신속히 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85)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5항.

86)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6항.

87) WTO반덤핑관세협정 제9조 1항, 2항. ; 최승환, 전게서, p. 259.

행해져야 한다.⁸⁸⁾

제5절 반덤핑관세 부과와 소급적용과 일몰조항

1. 소급적용

잠정조치와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부과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비용으로 수입된 물품에만 적용된다.⁸⁹⁾ 다만 피해의 최종적인 판정⁹⁰⁾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적인 판정의 경우에 잠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다면 덤핑수입의 효과가 피해가 있다는 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⁹¹⁾ 그리고 조사당국이 ① 과거에 피해를 야기한 덤핑을 행한 전력이 있거나 혹은 수출자가 덤핑행위를 하고 그러한 덤핑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입자가 인식을 했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경우라고 결정하였거나, ② 피해가 덤핑수입물량의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걸친 수입량의 급증에 의해 야기되고 수입품 재고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여타의 상황이 기존의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결정을 할 경우 확정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 적용전 90일 이내에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⁹²⁾

2. 일몰조항(日沒條項)

88) WTO반덤핑관세협정 제9조 3항. 최승환, 상계서, p. 259.

89)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0조 1항.

90) 피해의 우려 및 산업설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이유로 하는 판정은 제외.

91)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0조 2항.

92)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0조 6항.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 시키는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한 정도 및 기간까지만 그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화되는 경우에 반덤핑관세 부과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검토의 결과 반덤핑관세의 지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동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즉각 종결되어야 한다.⁹³⁾

제6절 분쟁의 해결

반덤핑관세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WTO 회원국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WTO의 DSU(분쟁해결양해)가 적용된다.⁹⁴⁾

분쟁의 발생시 회원국은 반덤핑관세협정하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국에 생길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여타 회원국이나 회원국들에 의해 반덤핑관세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문제된 타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협의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⁹⁵⁾

만일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가격인상 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취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를 요청한 국가는 문제를 WTO의 DSB(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 조치가 잠정조치의 요건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국은 동 문제를 WTO의 DSB에 회부할 수 있다.⁹⁶⁾

93)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1조 1항, 2항.

94)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7조 1항.

95)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7조 3항.

96)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7조 4항.

제4장 상계관세제도

제1절 상계관세제도의 개념

1. 상계관세제도의 의의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즉,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해야하고,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발동할 수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바로 상계관세제도이다.⁹⁷⁾

2. 상계관세제도의 정립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의하여 수출장려나 수입억제 등과 같은 무역왜곡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GATT를 비롯한 국제통상규범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국제교역에 주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79년의 동경라운드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은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였다.⁹⁸⁾

97)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계서, p. 4.

98) 서헌재, 전계서, p. 365.

그러나 국가의 산업지원수단은 대단히 복잡하고 그 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구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보조금규범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산업이 자국산업보다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조금에 관한 국제규범의 강화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많은 개도국들은 보조금 규범의 강화가 자국의 성장전략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여 왔다.⁹⁹⁾

이에 따라 UR보조금협상에서는 국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관련된 GATT규범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계관세의 발동 요건 및 절차를 명료히 함으로써 각국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통상분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요건, 보조금액의 산정기준, 개도국우대조치와 재분류문제 등이지만,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규제와 특정산업지원제도 문제 등은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협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¹⁰⁰⁾

3. 상계관세부과의 요건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 수혜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② 그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③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상기 ②와 ③은 반덤핑관세제도가 준용된다.¹⁰¹⁾ 따라서 본 연구는 상계관세부과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고찰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 수혜물품의 수입'만

99) 상계서, p. 365.

100) 최승환, 전계서, p. 264.

101)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계서, p. 17.

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가. 보조금의 의의

‘1994년 GATT’규정과 달리¹⁰²⁾,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1) 보조금(subsidy)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즉,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지원’¹⁰³⁾이나 또는 ‘1994년 GATT’ 제16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에 해당하고, 2)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을 보조금이라 정의하였다. 다만 상기와 같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성격상 ‘特定性(specificity)’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¹⁰⁴⁾

나. 보조금의 특정성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중요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즉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 1항에서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기관의 관할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¹⁰⁵⁾

① 공여기관 또는 관련 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일부 기업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

102) ‘1994GATT’는 제16조에서 “회원국이 직접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103) 즉, ① 차급 및 채무의 직접적 이전, ② 세액공제 등 정부세입의 포기, ③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④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상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

10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 1항, 2항. ; 최승환, 전게서, p. 264.

10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1항.

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②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¹⁰⁶⁾ 설정하고, 당해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 다만, 이들 기준 및 조건은 법령,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시되어 입증가능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①, ②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요소들이¹⁰⁷⁾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에서 대한 결정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¹⁰⁸⁾

한편 공여기관의 관할지역 중 특정지역내에 위치하는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특정적이다.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 어떤 수준의 정부에서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결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¹⁰⁹⁾ 다만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¹¹⁰⁾

다. 보조금의 종류

(1) 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이란 농산물협정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가 의미하는 보조금으로서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¹¹¹⁾ 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거나, 수입물품 대신 국산물품사용

106) 여기서 객관적 기준 및 조건이라 함은 중립적이고, 특정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 성격의 것으로서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즉 중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 등을 말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1항., 주석2))

107) 제한된 숫자의 기업에 의한 보조금 사용, 특정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주된 사용, 특정기업에 비례적이지 않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 공여, 보조금공여 결정에 있어 공여기관에 의한 차별적인 방식, 보조금지원정책이 집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기관의 경제적활동의 다양성 정도.

10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4항.

10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2항.

11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3항.

에 대하여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금지보조금의 공여는 국내산업피해의 입증 없이 상계조치가 가능하다.

(2) 상계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으로서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산업피해, 관세양허의 무효화, 침해 등)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특정성은 보조금을 특정기업(산업) 또는 특정지역내의 기업에게만 지급할 경우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계가능보조금은 국내산업의 피해, 인과관계의 입증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하다.¹¹²⁾

(3) 허용보조금

허용보조금이란 특정성이 없는 모든 보조금을 말하며,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으나 잠정적용규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1조) 적용기간이 1999. 12. 31일자로 만료되었다.¹¹³⁾

제2절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1. 금지보조금의 정의

111)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성과와 관련이 없으나, 실제로는(in fact) 예상 또는 실제 수출이나 수출입과 연관된다는(tied) 사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이 의미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12)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20.

113)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20 - 21.

금지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부로 지원되는 수출보조금, 국산품사용 조건부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을 말한다.

2. 금지보조금의 종류

가. 수출보조금

UR협상에서는 금지되어야 할 수출보조금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하되 이를 제한적인 성격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EC 등 선진국은 한정적인 리스트가 작성될 경우 이를 회피할 많은 방법들이 즉시 고안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조금협정은 이를 종합하여 일단 본문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되 부속서 1에서 예시적인 수출보조금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¹¹⁴⁾

나. 수입대체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유일한 조건으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114) 서헌제, 전게서, p. 371. 보조금협정 부속서 1에 포함된 수출보조금의 12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수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직접보조금, ② 수출상여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는 유사한 관행, ③ 수출선적분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국내운송서비스 제공, ④ 정부가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국산 또는 수입자재나 용역의 제공, ⑤ 기업이 납부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과금을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는 것, ⑥ 직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수출실적과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⑦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소비 물품의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하는 면제 또는 경감, ⑧ 국내소비품의 생산을 위한 자재 등에 부과되는 누적간접세보다도 수출품에 우대하는 경우, ⑨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 징금을 초과한 환급을 한 경우, ⑩ 정부가 수출보험체도의 장기적인 운영이나 손실보전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수출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 ⑪ 정부가 조달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하거나 수출기업자금조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⑫ 그 밖의 공공계정의 부담.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원자재와 부품을 보호하는 관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자원의 국제적 흐름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¹¹⁵⁾

3. 구제절차

금지보조금에 대하여는 상대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른 救濟나 제5부의 규정에 따른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두 구제절차는 병행하여 진행시킬 수 있지만 조치는 둘 중의 하나만 취할 수 있다.¹¹⁶⁾

가. 협의 및 대응조치

다른 회원국에 의해 금지보조금이 공여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회원국은 그 다른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¹¹⁷⁾, 협의요청을 받은 당해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¹¹⁸⁾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¹¹⁹⁾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의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즉시패널(panel)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DSB는 다수의 동의로 동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¹²⁰⁾

패널은 그 구성 및 위임사항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모든 회원국에게 배포하여야 한다.¹²¹⁾ 다만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DSB의 결정에 대

115) 상계서, p. 372.

116) 상계서, p. 373.

11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1항.

11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3항.

119)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12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4항.

12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6항.

한 이의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DSB가 다수의 동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SB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¹²²⁾

그리고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이라고 판정될 때에는 패널은 보조금 공여국에게 지체 없이 동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¹²³⁾협의요청에서부터 패널보고서의 채택까지의 기한은 총 150일이 소요되며 항소가 있는 경우 30일 또는 60일이 추가된다.¹²⁴⁾

DSB의 권고가 패널이 지정한 기간(패널 보고서 또는 이의심의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는, 다수의 동의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국에 적절한¹²⁵⁾ 대응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¹²⁶⁾

나. 상계조치

금지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상대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5절 상계조치의 발동요건과 절차에서 상술한다.

제3절 상계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12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8항.

12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7항,

12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9항.

125) 이 표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되는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불균형적인 대응조치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2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9항.

1. 상계가능보조금의 정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 이외의 모든 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 즉, 상계가능보조금이란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으로서 타 회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산업피해, 관세양허의 무효화, 침해 등)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즉각적인 철폐의무는 없으나 상대국의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철폐되어야 한다.¹²⁷⁾

2. 상계가능보조금의 요건

가. 부정적 교역효과

어떤 회원국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 상의 보조금을 통하여 ① 타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② '1994년 GATT'에 따라 타회원국이 직접·간접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③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과 같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농산물협정에 따라 공여되는 농산물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²⁸⁾

나. 심각한 손상

여기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즉, ① 물품에 대한 총보조금액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

127) 서헌제, 전게서, p. 374.

12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조.

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③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되풀이될 수 없는 1회적 조치를 제외한다. ④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 보유채권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등이다.¹²⁹⁾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①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공여국으로의 동종물품의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 ② 보조금으로 인해 여타 회원국의 제3국에 대한 동종물품의 수출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 ③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회원국의 세계시장에서의 특정 피보조일차 상품 또는 상품의 점유율이 과거 3년간에 비교해서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 지급기간 중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날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¹³⁰⁾ 그러나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이 위와 같은 어떠한 효과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심각한 손상 추정 은 배제된다.¹³¹⁾

3. 구제절차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상대국은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부의 규정에 따른 구제절차나 제5부의 규정에 따른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두 구제절차는 병행하여 진행시킬 수 있지만 조치는 둘 중의 하나만 취할 수 있다.¹³²⁾

가. 협의 및 대응조치

12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 1항.

13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 3항.

13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 2항.

132) 서헌제, 전제서, p. 377.

회원국은 타회원국에 의하여 공여 또는 유지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에 의한 보조금이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 무효화·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믿어지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타 회원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¹³³⁾ 이 협의요청은 ① 당해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 ② 협의요청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초래된 피해 또는 이익의 무효화, 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¹³⁴⁾ 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당해 보조금을 공여 또는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¹³⁵⁾ 60일 이내에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당사국은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의 구성은 패널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¹³⁶⁾

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는 패널 구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¹³⁷⁾ 그리고 분쟁당사국 일방이 DSB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 DSB가 총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SB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¹³⁸⁾ 다만, 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설항소기구는 분쟁당사국의 공식적 이의제기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항소기구가 6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의 사유 및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을 DSB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소보고서는 동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한 날로부터

13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1항.

13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2항.

13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3항.

13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4항.

13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5항.

13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6항.

20일 이내에, DSB가 총의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DSB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며 조건 없이 이해당사국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¹³⁹⁾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DSB가 패널보고서 또는 항소보고서를 채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동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동 보조금을 철폐하지 않고 또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DSB는 총의에 의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존재한다고 결정된 동 불리한 효과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해결 요청국에 부여한다.¹⁴⁰⁾

나. 상계조치

상계가능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상대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제5절 상계조치의 발동절차에서 상술한다.

제4절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1. 허용보조금의 정의

허용보조금이란 정당한 산업지원책으로서 허용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앞에서 고찰한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 종래 미국은 국내보조금에 관하여도 특정성이 있는 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에서 그 국가의 사

13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7항.

14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9항.

회적, 경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계조치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¹⁴¹⁾

어떠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UR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 등은 잠정적용규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1조)에 의하여 그 허용기간이 1999. 12. 31일자로 만료되었다.

즉, 현재 현행 허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1999.12.31일부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이를 대체할 규정이 불비한 상태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DDA 규범협상에서는 허용보조금과 관련하여 허용보조금의 종류, 허용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지만, 현재 DDA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불비의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다만, DDA 규범협상에서 허용보조금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보조금협정상의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의 원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확립된 원칙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기존범위(환경, 연구개발, 지역개발)에 한정하거나 가능한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고, 개도국들은 기존의 허용보조금 이외에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개발보조금도 허용보조금의 범주에 포함시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²⁾

2. 허용보조금의 유형

허용보조금은 ① 본협정 제2조(특정성)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연구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 환경보조금과 같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아 국가정책상 지급이

141) 서헌제, 전게서, p. 378.

142) [www. wtodda. net/etc](http://www.wtodda.net/etc)

허용되는 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다만 상기연구개발보조금과 지역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¹⁴³⁾

가. 연구개발보조금

연구개발보조금은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산업적 연구인 경우 소요비용의 75%, 경쟁전 개발활동¹⁴⁴⁾인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정되는 지원이어야 한다. 즉, i) 인력비용(연구원, 기술자 및 기타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기타 지원 직원), ii)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또한 영구적으로 이용되는(상업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장치·설비·토지 및 건물 비용, iii) 구입된 연구·기술지식·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상담 및 그에 상응한 서비스의 비용, iv) 연구활동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용, v) 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재료, 공급품 등과 같은 비용)에 한정된 지원이어야 한다.¹⁴⁵⁾

나. 지역개발보조금

지역개발보조금은 지역개발의 일반적 계획에 의하여 회원국내의 낙후지역을 위

14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1항. ; 최승환, 전게서, p. 269.

144) '경쟁전 개발활동'이라 함은 산업적 연구결과를 상업적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원형의 창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목적으로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적인 공식과 대체상품·공정 또는 용역의 도안 및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며 다만, 동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물품, 생산공정, 제조공정, 용역 기타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이 개선을 나타낼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1항 a의 주석 28))

14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a).

한 지원으로서 수혜지역 내에서는 특정이지 않게 공여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i) 낙후지역이라 함은 정의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동일성을 가진 인접한 지리적인 특정지역이어야 한다. ii) 지역의 낙후성 여부는 일시적인 상황 이외의 지역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¹⁴⁶⁾에 의해 고려된다. 그러한 기준은 입증 가능하도록 법령, 규정 또는 공식문서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iii) 이들 기준은 ① 1인당 소득, 가구당 소득 또는 1인당 GDP 중 하나 단, 전국 평균의 85% 이상이 아닐 것, ②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최소한 110%일 것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한다(이들 측정치는 3년의 기간동안 측정된 것이어야 한다).¹⁴⁷⁾

다. 환경보조금

환경보조금은 기업들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을 적응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즉, i) 비반복적 1회적 조치이어야 하며, ii) 적응비용의 20%로 한정되어야 하고, iii)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며, iv) 기업의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그에 비례하여야 하며, 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고, v) 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해야 한다.¹⁴⁸⁾

146)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란 지역발전정책의 계획내에서 지역적 불합리함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는 기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보조금 제도는 개별보조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지원액의 상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하며, 투자비용 또는 직업창출비용의 개념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동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자원의 배분은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본협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그 기업에게 다액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야 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b의 주석30)).

14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b).

14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c)

3. 구제절차

가. 협의 및 대응조치

허용보조금이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회원국은 그 보조금 공여 회원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¹⁴⁹⁾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동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⁵⁰⁾ 협의 결과,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¹⁵¹⁾

동 사안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제소되면 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과 증거를 검토하여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회원국에게 문제된 (보조금지급)계획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효과의 성질 및 정도에 상응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요청 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한다.¹⁵²⁾

나. 상계조치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지만 보조금의

14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1항.

15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2항.

15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3항.

15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4항.

특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는 허용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지원, 지역개발지원, 환경보조금에 대하여는 상계조치를 할 수 있다.¹⁵³⁾

제5절 상계조치의 발동절차

1. 조사의 개시

조사는 관계당국이 보조금과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하는 직권조사 개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보조금의 존재, 정도 및 효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산업에 의한 또는 그를 대신한 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¹⁵⁴⁾ 동 신청서에는 보조금과 그 규모, 국내산업의 피해, 보조금을 받은 제품의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¹⁵⁵⁾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요청이 국내산업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동종물품의 국내산업에 의해 표시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대한 검증에 근거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한 경우이외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동 요청이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의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들이 지지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동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들이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2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될 수 없다.¹⁵⁶⁾

2. 조사의 진행

153) 서헌제, 전게서, p. 380.

15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1항, 6항.

15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2항.

15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4항.

관계당국이 당해 산안의 진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요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결된다. 보조금액이 소액이거나 보조금 지급제품의 수입물량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가 종결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는 통관절차를 방해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¹⁵⁷⁾

상계관세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 회원국과 모든 관련당사자들은¹⁵⁸⁾ 권한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¹⁵⁹⁾ ‘조사당국은 성질상 비밀이거나(예를 들어, 공개로 인해 경쟁자에게 상당한 경쟁상 이익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가 정보를 획득한 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효과를 초래한 경우), 또는 조사 관련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비밀유지를 요청하면서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의 별도의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¹⁶⁰⁾ 또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이나 관련당사자에게 확정적 조치여부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고려되는 중요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공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¹⁶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요청이 수락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가 개시되기 전 어느 때라도, 자국물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제11조 1항에 규정된

15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9- 11항.

158) 본 협정의 목적상 관련당사자라 함은 i)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수입자, 또는 이들이 구성원의 다수인 무역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와, ii) 수입국의 동종물품생산자 또는 이들이 구성원의 다수인 무역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9항).

15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1항.

16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4항.

16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8항.

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또한 조사기간 중에도 자국물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실제상황을 명백히 하고,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¹⁶²⁾

3. 피해의 판정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 ①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량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동종물품¹⁶³⁾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효과 및 ② 동 수입품이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¹⁶⁴⁾ 여기서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피해’와 중대한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 지연을 의미한다.¹⁶⁵⁾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결정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여건의 변화는 명백히 예상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존재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특히 i) 당해보조금의 성격 및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ii) 상당한 정도의 수입증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시장으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수입의 현저한 증가율, iii)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iv)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인하 또는 억제효과, v) 조사대상물품의 재고현황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¹⁶⁶⁾

16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3조 1 - 2항.

163) 본 협정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동일한 즉, 모든 면에서 고려대상 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 또는 이 같은 물품이 없을 경우,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고려대상물품과 밀접하게 유사한 다른 물품을 의미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조 1항 주석44).

16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조 1항.

165) 최승환, 전제서, p. 272.

16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조 7항.

4. 잠정조치와 약속

가. 잠정조치

조사당국은 잠정적으로 보조금액에 상당한 현금의 예치나 채권담보의 형태로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는 i) 조사개시가 공표되어 이해회원국과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와 적절한 기회를 제공 받고, ii)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된다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iii) 조사기간 중에 초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단 기간에 한정되고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¹⁶⁷⁾

나. 약속

한편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약속이 제의 될 경우 잠정조치나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즉, ①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의 철폐나 제한, 또는 이 같은 효과를 갖는 별도의 조치에 동의하거나, ② 보조금에 의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수정할 것을 수출자가 동의하는 경우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¹⁶⁸⁾

5. 상계관세의 부과

협의종료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와 그

16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7조 1- 4항.

16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8조 1항.

금액에 대해 최종관정을 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초래된다고 최종관정을 내린 경우, 동 회원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계관세 부과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와 그 금액은 수입국 당국이 결정한다. 그러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보조금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⁶⁹⁾

잠정조치와 상계관세는 당국의 관련 결정이 발효한 이후에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피해의 최종관정이 내려지거나, 피해의 위협에 대한 최종관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없었더라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의 효과가 피해관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 상계관세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 소급적용 여부에 따른 예치금의 환급이나 또는 채권담보의 해제는 반덤핑관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¹⁷⁰⁾.

상계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지속되어야 한다. 상계관세는 상계관세의 종료가 보조금의 지급과 피해의 계속 도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지 않는 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¹⁷¹⁾

16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9조 1 - 2항.

17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0조 1 - 6항.

17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1조 1항 - 3항.

제5장 세이프가드제도

제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정립과정

1. 세이프가드제도의 의의

1947년의 GATT를 살펴보면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라는 표현은 있으나,¹⁷²⁾ 세이프가드(safeguads or 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safeguads or safeguard measures’라고 이해하여 왔던 것은 보존조항(safeguard clause)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相違와 예기치 않은 사정의 발생으로 법규의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약의 탈퇴, 폐기 또는 위반의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히 경제관계 조약의 경우, 그 조약의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조약 당사국의 기본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에 대하여 그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의 조항을 두는데, 이것을 보존조항(safeguard clause)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긴급수입제한조치가 GATT의 일시적 적용정지라는 점에서 학자들이 講學上 그렇게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¹⁷³⁾

반면에 WTO체제하에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드협정이 체결되어 세이프가드(safeguards or safeguard messures)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하면 이러한 ‘safeguards’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172) GATT 1947, 제19조.

173) 박용현,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1호(1996, 통권 제79호), 1996, p. 77.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⁴⁾ 이것은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세이프가드의 개념이 GATT 1947 제19조에 따른 종래의 세이프가드 개념보다 廣義의 개념이 되었음을 뜻한다.¹⁷⁵⁾

따라서 세이프가드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그 상품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수입국이 실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산업구조조정조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¹⁷⁶⁾

2. GATT 제19조

1947년 10월 30일 성립한 GATT와 그 이후 UR협정 타결전까지 정정 개정 및 수정된 모든 부수협정을 총괄하여 'GATT 1947'이라고 하며, 그 기본골격을 그대로 승계하면서도 UR협상을 통하여 양해의 형식으로 보완한 GATT체계를 'GATT 1994'라고 한다.¹⁷⁷⁾ 따라서 양자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서이면서도¹⁷⁸⁾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 다만 1994년 12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린 이행회의(Implementation Conference on Transitional Arrangements)에서 참석각료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GATT 1947 및 WTO협정의 잠정적 공존에 관한 결정」에 의하여 GATT 1947은 이미 199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⁷⁹⁾

이와 같이 성립된 GATT는 그 제19조에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174)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175) 박용현, 전계논문, p. 77.

176) 상계논문, p. 77.

177)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1(a)

178) WTO설립협정 제2조 4항.

179) 박용현, 전계논문, pp. 77 - 78.

그 착안은 일찍이 1947년의 GATT 입안자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GATT 입안자들은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과 같은 무역자유화조치의 결과로 발생하는 예견할수 없었던 사태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계약당사자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하였고,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다.¹⁸⁰⁾ 이와 같은 인식이 GATT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본 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인해 어느 물품이 동 계약당사자의 영역내의 동종물품이나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동 계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 계약당사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당해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¹⁸¹⁾라고 반영됨으로써 소위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불리우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 of particular products)규정이 삽입되게 된 것이다.¹⁸²⁾

3.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배경

GATT 1947 제19조상의 긴급수입제한제도는 발동요건, 절차, 보상과 보복조치 등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특히 차별적인 성격을 띤 긴급수입 제한조치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비난을 받아 왔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C(EU) 등 선진국들은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iction : 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180) 고준성, “UR Safeguards 협정의 법적 분석” 「국제법률경영」, 통권 20호 (1994 여름호), p. 6

181) GATT 1947 제19조 1항 a.

182) 박용현, 전계논문, p. 78.

Agreement) : OMA' 등을 통해 수입제한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 왔는데, 이들은 수출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이 통제되어 GATT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라 불리우기도 한다.¹⁸³⁾

상기와 같은 배경하에서 개시된 세이프가드에 대한 UR협상은 GATT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세이프가드제도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도록 명확히하고 강화함으로써 GATT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UR협상에서는 선별적용의 인정여부 및 조건, 회색조치의 범위 및 철폐기간, 보상과 보복의 면제조치 및 기간, 개도국우대조항 규정여부, 국내산업의 범위, 세이프가드조치발동기간, 재발동금지기간, 잠정조치기간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다.¹⁸⁴⁾

즉, GATT 1947 제19조는 ㉠발동요건의 하나인 '심각한 피해'의 의미의 모호성, ㉡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에 관한 국내절차가 불분명한 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GATT에의 통고 및 협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다.¹⁸⁵⁾ 그리고 그 운용과정에서도 필요한 최단기간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이프가드조치의 본래의 취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비난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선진수입국들이 세이프가드조치를 이용하기 보다는 灰色地帶措置(grey area measures)라고 통칭되는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s:VERs)나 市場秩序維持協定(Orderly Marketing Agreements:OMAs) 등을 통하여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하게 취함으로써 동 제 19조의 實效성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아 왔던 것이다.¹⁸⁶⁾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973년의 Tokyo Round에서 공식화된 이후, 1986년부터 시작된 UR에서는 세이프가드교섭그룹이 구성되어 협상이 진행되었고, 1990년 12월에는 George Maciel 세이프가드교섭그룹 의장 초안이 마련

183) 최승환, 전계서, p. 277.

184) 상계서, p. 277.

18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서울: 창신사, 1994), pp. 517-518.

186) 박용현, 전계논문, p. 78.

되었다.¹⁸⁷⁾ 동 초안은 일부의 수정을 거쳐 Dunkel GATT 사무총장의 초안으로 되었으며, 1991년 12월 세이프가드최종협정문(Final Text Agreement on safeguards)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¹⁸⁸⁾ 그리고 이것이 1993년 12월 15일 채택된 UR최종의정서의 제2부 세계무역기구설립 협정의 부속서 1A 상품교역협정에 첨부된 14개 부속협정의 하나로 포함되어 세이프가드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으로 성립되게 된 것이다.¹⁸⁹⁾

제2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요건

WTO 체제상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될 것, ② 이로 인해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을 것, ③ 당해물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¹⁹⁰⁾

1.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회원국은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187) GATT, Safeguards, GATT Doc. No. MTN. TNC/W/35/Rev. 1(Dec. 3, 1990), pp. 182-192

188) Draft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 Doc. No. MTN. TNC/W/FA, Dec. 20, 1991.

189) 박용현, 전계논문, pp. 78 - 79.

190) 한편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한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본 협정하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의 결정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을 관세동맹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한 회원국을 대신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의 결정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은 그 회원국에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리고 조치는 그 회원국에 한정되어야 한다.(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및 주석 1)

물량으로, 그리고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상황하에 동 회원국의 영토내로 수입되고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만 당해 물품에 대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⁹¹⁾ 즉,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absolute or relative)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입물량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란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또는 전체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생산의 감소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¹⁹²⁾ 따라서 절대적인 수입량이 비록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수입량의 증가로 인정될 수 있다.¹⁹³⁾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94년 GATT’ 제19조에서는 ‘증가된 물량(increased quantities)’으로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증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상대적 증가’를 명시함으로써 상호의존적인 관계인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세이프가드조치가 각국간 부담의 분담이나 완충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¹⁹⁴⁾ 반면에 수입물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외국에 전가하는 것은 특히 국제 및 국내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보호주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¹⁹⁵⁾

또한 GATT 제19조에 따르면, 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에 의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즉, 국내산업의 손해가 최근 통상협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사태의 발전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한다.¹⁹⁶⁾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19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1항.

192) 최승환, 전제서, p. 279.

193) 박용현, 전제논문, p. 79.

194) 서헌제, 전제서, p. 396.

195) J.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The Michie Company, 1969), pp. 558 - 559. (최승환, 전제서, p. 280.에서 재인용)

196) 고윤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숙명여자대학교, 2004), p. 25.

GATT 제19조 1항에만 있고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하기 위하여 충족시키야 하는 별도 조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는 Korea-Dairy Product 사건을 들 수 있다. 즉, EC는 한국정부가 수입증가의 요인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조항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WTO체제하에서는 세이프가드협정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과 관련한 전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GATT 제19조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¹⁹⁷⁾

그렇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체약국이 관세 양허협상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관세양허 이후에 국내산업이 수입의 급증으로 인하여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사태가 발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GATT상 의무이행’이란 GATT에 양허된 관세를 적용 의무 뿐만 아니라 최혜국대우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수량제한철폐의무, 공정무역의무 등을 포함한 GATT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¹⁹⁸⁾

이와 같은 요건을 생각건대, ‘예측하지 못한 사태’라는 문구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해석상의 지침도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수입의 급증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GATT 의무준수의 결과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死文化된 요건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각은 同要件이 GATT 1994의 제19조와는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에는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¹⁹⁹⁾

197) GATT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은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하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의 국내법에서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을 규정한 조항을 찾을수 없으며,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이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을 규정한 조항을 찾을수 없으며,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이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사례를 살펴보아도 동 조문을 발동요건으로 검토한 사례를 찾을수 없다.(상계논문, p. 25)

198) 이상윤, 「국제경제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5), p.316.

199) 박용현, 전계논문, p. 80.

2.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가.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발생하여야 한다.²⁰⁰⁾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동종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세이프가드조치는 직접경쟁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제품’(like product)의 개념을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제품’으로 한정하여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반덤핑협정의 목적이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것이 남용될 경우에는 공정무역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제품 개념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접경쟁제품’은 규정의 배열로 보아, 동종제품의 확장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협정상 경쟁제품 여부를 판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직접경쟁제품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²⁰¹⁾

피해 또는 그로부터의 위협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이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영업을 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들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제품의 총산출량이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의 ‘상당부분’(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을 의미한다.²⁰²⁾ 여기에서의 ‘상당부분’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 데, ‘세이프가드협정’은 ‘반덤핑관세협정’과는 달리 ‘주요한 몫’이 몇 %이상인지 여부, 대상물품의 수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분리된 시장도 국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²⁰³⁾

200)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1항.

201) 최승환, 전제서, p. 280.

202)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항 (c).

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동종제품이나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 또는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며,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란 심각한 피해가 명백히 급박한 것을 의미한다.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²⁰⁴⁾

한편,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 당국은 당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모든 관련요인을 평가하며, 특히 관련물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 수입증가율과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생산·생산성·가동율·이윤 및 손실·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²⁰⁵⁾

3. 인과관계의 존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회원국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물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 수입증가 이외의 다른 요소가 국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²⁰⁶⁾

203) 최승환, 전제서, p. 280.

204)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항 (a), (b).

205)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항 (a)

그러나 협정은 인과관계의 존재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수입증가 이외의 기타요인과 동시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만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에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²⁰⁷⁾

제3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

1. 조사의 개시

회원국은 '1994년 GATT' 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따라 이미 제정되고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당국의 조사에 의해서만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이 공공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하여, 증거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한다. 조사당국은 사실과 법에 대한 모든 관련쟁점에 대하여 도달한 사실인정과 추론된 결론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표한다.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 제출자의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조사당국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위협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여 검토된 요인들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 뿐 만 아니라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내용을 공표해야 한다.²⁰⁸⁾

206)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항 (b)

207) 이상길, "WTO상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p. 15.

208)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 1항, 2항., 제4조 2항 (c) ; 최승환, 전거서, p. 282.

2. 잠정조치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부패성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염두에 두고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잠정적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배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인상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²⁰⁹⁾

3. 구제조치

가. 수입제한조치

상기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은 당해 물품의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인상 등 GATT상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양자는 모두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할 것이다.

(1) 관세인상

관세인상에 대해서는 GATT 제19조에서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209) 세이프가드협정 제6조.

나²¹⁰⁾ 세이프가드협정 전체의 내용은 관세 양허의 철회 및 수정을 주된 조치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2) 수입수량제한

세이프가드조치 수단으로 수입수량제한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수준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 한 통계활용이 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이하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없다.²¹¹⁾

나. 구조조정 지원조치

구조조정을 위하여 수입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즉,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조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어더한 구조조정조치를 채택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의 융통성을 갖는다는 UR협상시 던켈초안(Dunkel draft)과 달리 최종협정문은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생각컨데 이전의 협정안과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출)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허용된다고 본다.²¹²⁾

다만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허용보조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출보조금과 같이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특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이

210)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전단.

211)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후단.

212) 최승환, 전게서, p. 283.

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은 가급적 상계대상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세이프가드조치는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협정의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한 금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관련 회원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²¹³⁾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1. 적용대상의 통제

회원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제품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²¹⁴⁾ 소위 최혜국대우원칙(MFN)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수출국들과 협의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기 물량이하로 수입을 더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친 후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용을 허용하였다.²¹⁵⁾ 다만, 세이프가드조치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할 경우 수출국들 간에 쿼타를 割當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 각 수출국별 종전의 수출물량이나 가격과는 상관없이 쿼타를 할당할 수 있게 허용해 줌으로써 기존의 쿼타 할당 국가에 대하여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다.²¹⁶⁾

213) 상계서, p. 283.

214)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2항.

215) 최승환, 전계서, p. 285.

216)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계서, p. 27.

2. 내용상의 통제

세이프가드조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구제하거나 산업구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수량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없다.²¹⁷⁾

3. 적용기간의 통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촉진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만 적용하도록 하고 최초조치의 경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²¹⁸⁾ 다만, 수입국 당국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계속필요하며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하고 제8조(보상과 보복조치)와 제12조(통보 및 협의)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나, 잠정조치 발동기간(최대 200)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 중 점진적으로 규제조치를 완화 또는 자유화 하여야 한다.²¹⁹⁾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발동될 수 있다. 즉,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세이프가드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동안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로 부과된 경우에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세

217) WTO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218)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7조 1항.

219)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7조 2 - 4항. ; 최승환, 전게서, p. 287.

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취할 수는 있다.²²⁰⁾

4. 기타의 의무에 의한 통제

가. WTO에의 통보 및 협의 의무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과 관련한 조사과정의 개시 및 그 사유,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판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도는 연장에 관한 결정, 잠정조치의 내용,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자국의 법규, 관행 및 행정절차와 그 수정사항 등을 WTO긴급수입제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²²¹⁾

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적용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 특정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당해 물품 수입이 그 물품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초과하지 않고, 그러한 여러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의 합계가 총 수입의 9%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당해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²²²⁾

제5절 보상 및 보복조치

1. 보상

220)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7조 5항, 6항.

22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 1항.

222)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조 1항.

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적인 무역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긴급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동국가는 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국에게 적절한 보상적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무역보상수단’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즉,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수입국이 당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수출국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당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시장개방의 확대가 포함된다.²²³⁾

2. 보복조치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수출국은 동 조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으로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관세양허나 기타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보복조치는 조치시행 30일전에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상품무역이사회가 보복조치에 반대하지 않아야 적용할 수 있다고.²²⁴⁾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취해지고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실시 후 3년 동안에는 정지권과 같은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²²⁵⁾

223) 최승환, 전계서, pp. 286 - 287.

224)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 2항.

225) WTOA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 3항.

제6장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적 수용

제1절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1. 반덤핑관세제도

우리나라의 반덤핑관세제도는 1963년 부당염매방지관세의 이름으로 관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입장벽이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 제도의 활용도가 없어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86년 2월 GATT반덤핑관세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관세관련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하였다.²²⁶⁾

현재 반덤핑관세제도는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를 母法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운영기관으로는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의 접수, 조사개시결정,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사실의 조사·판정, 약속제의 접수,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건의, 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다른 업무수행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제의 및 수락, 재심사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²²⁷⁾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덤핑수입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어야 하며,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 결정 및 판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절차는 다

226) 김진삼,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제3집(영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 12), p. 110.

227) 노승혁 전계논문, p. 50.

음과 같다.²²⁸⁾

첫째, 당해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둘째,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자격, 덤핑 및 피해근거, 신청의 지지정도를 고려하여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각각 3개월간 진행되며, 예비조사결과 덤핑율이 결정되고 피해가 있다는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4개월 이내로 잠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 예비조사절차에서 덤핑조사는 외국공급자별로 정상가격(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제3국 수출가격, 구성가격)과 덤핑수출가격을 조사하여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비교하기 위해 양 가격의 운반비, 금융비용, 판매할인 등 차이를 조정하고 공장도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하는데, 예비조사에서는 공급자별로 제출한 답변서 등 서면자료에 의하여 덤핑율을 예비결정하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피해판정시점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유무를 조사하게 된다.

넷째, 그리고 계속해서 본조사가 진행되는데, 덤핑율 조사팀은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제출한 답변서와 실제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사검증함과 아울러 추가 가격조사를 한다. 한편, 산업피해조사팀은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현지실사검증을 하게 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위원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 수출자들은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전까지 약속을 무역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약속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섯째, 본조사결과 덤핑율이 2% 미만으로 미미하거나 피해가 무시할만한 수준

228) 상계논문, pp. 51 - 52.

인 경우 조사는 종결되며, 무역위원회의 본조사결과 덤핑율과 피해긍정판결을 하게 되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한다. 재정경제부장은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덤핑수입물품을 공급하는 외국의 수출자는 수출가격 인상약속 또는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은 그 약속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락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지 1년이 경과하면 변경된 상황 또는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는 재정경제부장이 신청을 접수 받아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상계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는 우리나라가 1980년 GATT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가입한 이래 외국의 보조금지급제품의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GATT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16조(보조금), 제23조(분쟁해결) 및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규정에 맞추어 준비되었다.²²⁹⁾

상계관세제도는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를 母法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8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계관세제도의 운영기관도 반덤핑관세제도와 같이 무역위원회가 부과신청의 접수, 조사개시결정, 보조금 산정, 국내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약속제의 접수, 잠정조치 및 상계관세부과의 건의, 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약속의 제의 및 수락, 재심사신청의 접수업무를 수행한다.²³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어야 하며, 보조금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에

229) 김진삼, 전계논문, p. 111.

230) 노승혁, 전계논문, pp. 52 - 53.

대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특정성”은 “보조금 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로 저의하였다. 그리고 보조금 및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 및 판정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반덤핑관세제도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²³¹⁾

3. 세이프가드제도

우리나라는 1986년 중반까지 높은 관세율과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허용되어 온 다양한 수입장벽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수입자유화의 급속한 진전과 관세율의 인하, GATT 제18조국으로부터의 졸업에 따른 수입제한조치의 사용금지 등으로 GATT 제19조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 정비하였다.²³²⁾

현재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근거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다. 세이프가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무역위원회로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의 접수,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국내산업을 피해조사, 구제조치의 건의, 재검토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구제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상관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제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구제조치를 시행한다.²³³⁾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동종물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 그리고 수입 증가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와의 협의 및 통고, 발동에 따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이프가드조

231) 상계논문, p. 53.

232) 김진삼, 전계논문, p. 111.

233) 노승혁, 전계논문, p. 53.

치의 발동을 위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⁴⁾

첫째,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당해 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생산량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생산자 또는 그 집단)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고, 무역위원회는 신청요건 및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4개월 이내에 조사·판정한다.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기준은 수입의 증가여부,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정한다.

셋째,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유무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무역위원회는 1월 이내에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이나 관세율의 조정 등에 해당하는 조치 및 기간을 정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시행을 건의한다.

넷째,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잠정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월 이내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상관계, 구제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무역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그 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구제조치의 내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완화 및 해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34) 상계논문, pp. 53 - 555.

제2절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발동요건상의 명료성 부재

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에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 발생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과관계에는 정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분석방법론에는 일원적 방법론과 이원적 방법론이²³⁵⁾ 있는데, WTO 반덤핑관세협정에서는 일원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은 아직 그 조사기법이 개발되지 않아 향후의 경험이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세이프가드제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²³⁶⁾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피해존부 판정시의 검토사항과 피해우려 존부판정시의 검토사항들 간에 차이가 없는데, 피해우려 존부판정시의 검토사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까지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및 여타 국가의 입법 예 및 우리나라의 관세법령상의 규정을 감안하여 관련 산업계가 당해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실질적 증가 여하, 수출국의 수출능력과 수출가능성 여하, 그리고 수출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정도 여하 등을 검토사항으로 추가시킬 필요성이 있다.²³⁷⁾

다음으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이유로 하는 구제조치의 발동은 산업피해가 현실화 한 것이 아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동하는 것이므로 발동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제1항 b호에서 규정하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유무 판정은 역측, 추측,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를

235)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수입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236) 노승혁, 전계논문, p. 55.

237) 상계논문, p. 56.

두어야 하며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급박하고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산업피해구제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²³⁸⁾

2.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에서의 분산 운용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시간적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조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HS품목²³⁹⁾ 수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대부분이 WTO 양허관세율의 기속을 받는 품목이어서 현행의 조정관세만으로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제도 및 긴급관세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의 제정에 따라 관세법 및 여타 법률에 산재해 있는 산업피해관련 법률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²⁴⁰⁾

3. 산업피해구제제도 운용기관의 비독립성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피해에 대해서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산업피해판정 및 구제조치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피해구제기관의 독립성과 피해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및 전문성이 다음과 같이 확보 및 보장되어야 한다.²⁴¹⁾

첫째, 주요 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의 임원들이 전원 상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및 비상임위원 7인을 둬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238) 상계논문, p. 56.

239) HS 상품 분류 체계상의 품목을 말한다. HS 상품 분류 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CCCN 분류 체계(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를 모체로 개편하여 1988년부터 HS 6단위 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무역상품의 분류 체계로서 HS로 통용된다.

240) 노승혁, 전계논문, p. 57.

241) 상계논문, pp. 58 - 60.

관한다. 향후 명백히 증대될 산업피해구제 관련 제소건수를 고려 할 때 상임위원 및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 현재 국내산업피해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통계의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생산단체나 무역협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무역위원회가 객관성·효율성·투명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체제, 조직, 기능 및 운영상의 개편이 필요하다. 무역위원회가 산업자원부 소속이고 또한 산업자원부가 서비스산업 중에서 무역업 및 유통업만을 관장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부처간 협력과 책임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물론 기관의 행정조직상 소속여부 자체가 그 기능상 객관성 및 공정성의 이슈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 최소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무역위원회를 산업자원부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인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지위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대법원은 1994년 3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4개 합의부를 국제사건만을 다루는 재판부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특허법원 등의 개별법원은 존재하고 있으나 국제사건만을 다루는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법원내에 유지시킨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보인다. 따라서 무역사건 전담법원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는 관련 당사자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대내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담법원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및 산업피해구제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같은 전문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제7장 결 론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개방 폭이 넓어질수록 국내산업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²⁴²⁾ 그래서 WTO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WTO는 산업피해구제제도로써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 대응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WTO 반덤핑관세제도는 동경라운드의 ‘반덤핑관세협정’에 비해 반덤핑관세요건을 부과하는 발동요건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선진수입국들에 의한 반덤핑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시 증거요건 설정이 불명확한 점, 최소수준의 인정시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재심사를 통한 반덤핑규제의 연장을 허용한 점 등 관련규정의 모호하고 불명료한 표현 때문에 조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미국과 수출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동 협정에 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도입되기까지는 자국 국내법에 입각하여 우회덤핑의 방지조치를 강화해 나가리라 예상되는 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²⁴³⁾

242) 상계논문, p. 61.

둘째, WTO 상계관세협정은 기존 협정에 비해 보조금의 운용과 상계관세의 발동요건 및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강화함으로써 무역왜곡효과가 큰 보조금 지급이 철폐·감축되고 주요 선진국들에 의한 상계관세제도의 남용이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²⁴⁴⁾

셋째, 세이프가드제도가 대부분 선진수입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동 제도의 발동요건 및 절차 등이 강화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립한다는 GATT의 기본목표에 부합되는 일이다. 그러나 선별적인 수량제한을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서 허용함으로써 수입국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²⁴⁵⁾

넷째,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개방 폭이 넓어질수록 국내산업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뿐 만 아니라 산업피해구제제도가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이프가드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²⁴⁶⁾

243) 최승환, 전계서, pp. 261 - 262.

244) 상계서, pp. 276 - 277.

245) 상계서, pp. 288 - 289.

246) 노승혁, 전계논문, p. 61. 참조.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강인수, 「국제통상론」, 서울 : 박영사, 2003.
- 박형래, 박영기, 「산업피해구제와 대외무역법」, 서울 : 두남, 2006.
-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서울 : 법무부, 1994.
- 서헌제, 「국제경제법」, 서울 : 율곡출판사, 1998.
-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산업피해구제제도개관」, 2001. 12.
- 이은섭, 「국제거래법」,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 이상윤, 「국제경제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5
-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 : 법영사, 1998

나. 논문

- 고윤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4.
- 고준성, “UR Safeguards 협정의 법적 분석” 「국제법률경영」, 통권 20호(1994 여름호)
- 김진삼,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제3집(영남대학교 산업경영 연구소, 1995. 12)
- 김영근, 황상규, “WTO체제하의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동립경영연구」, 제6집(한국동립경영학회, 1997)
- 노승혁,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에 관한 고찰” 「무역구제」, 2006년 봄호/제22호(무역위원회, 2006. 4)

- 박용현,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1호(1996, 통권 제79호)
- 손기윤, “WTO체제하의 반덤핑협정 운용과 DDA 협상,” 「통상법률」(2002년 12월호)
- _____, “DDA 규범분야 협상동향과 한국의 대응,” 「통상법률」(2005년 4월호)
- 이상길, “WTO상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 이재원, “EU 반덤핑 규정 중 재심제도(Reviews)에 대한 고찰,” *Trade Remedy Review* (2006년 4월호)

2. 외국문헌 및 자료

- Lowenfeld Andreas 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Matsushita Mitsuo, Schoenbaum Thomas J. & Mavroidis Petros C.,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Vermulst Edwin & Graafsma Folkert, *Anti-Dumping, Subsidies and Safeguards*, Cameron may, 2002.
- Jackson, J. H.,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95.
- Jackson, J. H.,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95.
- Jackson, J. 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1969.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법학과	학 번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이 돈 국 한문: 李 敦 國 영문 : Lee Don-Guk				
주 소					
연락처	E-MAIL :				
논문제목	한글 :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 연구				
	영문 : A Study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Remedy of Industrial Injury				
<p>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p> <p align="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p align="center">동의여부 : 동의(0) 반대()</p> <p align="center">2007년 2월 일</p> <p align="center">저작자: 이 돈 국 (서명 또는 인)</p> <p align="center">조선대학교 총장 귀하</p>					